

# 입학사정회 운영 규정

2022년 7월 26일 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학칙 제18조의 2항에 따른 입학전형제도 개발과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 및 선발을 위한 입학사정회(이하 “사정회”라 한다.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사정회는 교학처장, 기획처장, 박사원장, 신학대학원장, 일반대학원장 등 5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
**제3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사정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 직제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사정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입학제도의 개발 및 심의

② 입학전형 주요사항 심의

③ 신체장애로 인하여 수학능력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되었을 경우 장애자 심사

④ 학칙 제 19조 규정의 입학사정, 단 입학사정대상인원이 5명 이내인 경우는 사정회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전공 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어 입학사정을 하여야 한다.

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

**제6조(회의)** ① 사정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사정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간사 등)** 사정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입학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.

**제8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사정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